

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943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15. 12. 17
제 안 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15년 5월 19일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, 같은 해 10월 22일 남창진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해 각각 5월 26일과 10월 27일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,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, 이들 2건의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,
- 용어 정의와 광화문광장 조형물등의 이용료 징수 규정을 명확히 하고,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서식을 정비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.
- ‘광화문광장’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며(안 제2조제1호),

- 조형물등의 이용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「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」에 따르도록 하고(안 제13조제2항),
-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(별지 제2호 및 제3호)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말하며, 필요시 차도 및 보도를 포함한 세종로 전체를
의미한다”를 “말한다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사용하고자 하는”을 “사용하려는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적합하게”를 “맞게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기재한”을 “적은”으로 하고, “사용하고자 하는”을 “사
용하려는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부여할”을 “붙일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명시하여 통지하여야”를 “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
려야”로 한다.

제9조 본문 중 “취할”을 “할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경과한”을 “지난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취하여야”를 “하여야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이용하고자 하는”을 “이용하려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변경하고자 하는”을 “변경하려는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의 이용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「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」에 따르며, 시장은 이용료 징수 등 저작권 관리를 위해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4조 본문 중 “취하여야”를 “하여야”로 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과 [별지 제3호서식]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"광화문광장"이란 세종로 중앙의 차도와 구분되는 장소를 말하며, <u>필요시 차도 및 보도를 포함한 세종로 전체를 의미한다.</u></p> <p>2. <생략></p> <p>3. "신청자"란 자신의 명의로 책임하에 광장을 <u>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.</u></p> <p>4. <생략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말한다.</u></p> <p>2. <현행과 같음></p> <p>3. ----- ----- <u>사용하려는</u> ----- -----.</p> <p>4. <현행과 같음></p>
<p>제3조(관리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설치된 동상 및 부속 조형물 등(이하 "조형물등"이라 한다)이 건립 목적에 <u>적합하게</u> 이용되고 그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관리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맞게</u> ----- -----.</p>
<p>제5조(사용허가 신청)</p> <p>① 신청자는 사용목적과 일시,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, 사용인원 등을</p>	<p>제5조(사용허가 신청)</p> <p>①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<u>사용하고자 하는 날</u>(이하 "사용일"이라 한다)의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<u>적은</u> ----- ----- <u>사용하려</u> <u>는</u> ----- -----.</p>
<p>제6조(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)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,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붙일</u> -----.</p>
<p>제7조(사용허가 등 통지) ① (생략) ②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<u>명시하여 통지</u>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사용허가 등 통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분명하게 적</u> <u>은 서면으로 알려야</u> -----.</p>
<p>제9조(사용허가의 취소·정지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(사용허가의 취소·정지)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할</u> -----.</p>
<p>제10조(사용료 징수 및 면제)</p>	<p>제10조(사용료 징수 및 면제)</p>

현행	개정안
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사용일이 <u>경과한</u>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지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1조(원상회복 등)</p> <p>①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<u>취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1조(원상회복 등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<u>하여야</u>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 (조형물등의 이용승인)</p> <p>① 조형물등을 저작권법 범위의 저작물로서 <u>이용하고자</u> 하는 자(이하 "이용자"라 한다)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형물등 이용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 사항을 <u>변경하고자</u>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조형물등 이용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</p>	<p>제12조 (조형물등의 이용승인)</p> <p>① ----- ----- <u>이용하려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<u>변경하려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아야 한다.</p> <p>제13조(조형물등의 이용료 징수 및 사용)</p> <p>① <생략></p> <p>② 제1항의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③ ~ ④ <생략></p> <p>제14조 (위반시 조치사항)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하여 「저작권법」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.</p> <p>제13조(조형물등의 이용료 징수 및 사용)</p> <p>① <현행과 같음></p> <p>② 제1항의 이용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「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」에 따르며, 시장은 이용료 징수 등 저작권 관리를 위해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④ <현행과 같음></p> <p>제14조 (위반시 조치사항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하여야 -----.</p>

